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노 동 복 지 과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약자와 영세사업자 등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야별 법률상담과 노동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 (2)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다. 위탁기간 : 2025. 4. 1. ~ 2025. 12. 31.(9개월)

라. 위탁사무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1) 노동약자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원스톱 지원사업
- (2) 미조직근로자·예비근로자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교육
- (3)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 마. 추진실적: (법률구조상담) 248건, (노동교육) 1,535명, (노무컨설팅) 10건
- 바. 소요예산 : 180,453천원 ※ 2025년 추계액 기준
-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1) 성과평가 결과 : 우수(84점)
 - 법률상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권리구제 사업과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노동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
 - 예산 및 회계처리, 복무사항 등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
 - (2)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
-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 가.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약자들이 겪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인권과 권리 향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동교육이 요구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법률구제서비스와 원활한 교육 제공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법률상담, 교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실행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3.

5. 참고사항

- 가.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 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다. 사진대지
- 라. 관계법령
-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 (2)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마. 비용추계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위탁기관 :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 위탁기간 : 2024. 7. 1. ~ 2024. 12. 31.[6개월]

○ 사 업 비 : 120백만원(국 84, 도 11, 시 25)

○ 평 가 자 : 2명(노사정책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

○ 평가항목

부문		공통분c	야(45점)			개별분야(55점)		
평가항목	사업 계획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인력 관리	사업 추진	사업 홍보	만족도	개선 노력
배점(100)	10	10	15	10	20	15	10	10
평점(84점)	8	7	13	8	17	12	9	10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84점(100점 만점)

○총 평

-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법률상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과 노무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 경상북도 내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근로자와 미래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권리보장 교육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였음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1. 사업기간 : 2024. 7. 1. ~ 2024. 12. 31.[6개월]

2. 사 업 비 : 120백만원(국 84, 도 11, 시 25)

3. 사업내용

- (법률구조상담)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사업, 노무컨설팅, 직장내 괴롭힘 지원 등
- (노동교육) 취약근로자, 미래근로자(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보장 교육 등
- 4. 추진실적(2024년)

○ 법률구조상담 및 권리구제

(단위: 건)

유형		노동 관련 상담						-7	권리구 [;]	제		
구분	근로 계약	임금 체불	근로 시간	직장 내 과 <u>ই</u> 함	성희 롱등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산재	기타	진정 등 사건 지원	심판 사건 지원	산재 보상
계		248							44			
법률 구조	26	77	23	8	3	36	1	22	52	31	4	9

○ 노동교육

(단위: 건)

대상 구분	미조직 취약근로자	예비근로자	지역별 특화산업 근로자	기타	계
노동교육	186	1,349	0	0	1,535

○ 영세사업장 노무컨설팅 : 10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일 시 : 2025. 01. 23.(목) 16:00

○ 장 소 : 별관 1층 노동조합 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

○ 심의대상 :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 심의내용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심사 및 선정

○ 심의방법 : 심의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 및 적격 여부 심의

- 심의기준 : 2개 분야, 7개 항목

- 채점방식 : 심의위원 평가점수 합산·평균

- 결정방법: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할

경우 심의 결과 '적격' 판정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심사 평균점수가 84점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심사	위원별	점수			심사
심의안건	A 위 원	B 위 원	C 위 원	D 위 원	E 위 원	F 위 원	G 위 원	B 평균 점수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	100	80	91	86	86	80	94	87.4

사진대지

□ 위 치 도



□ 현장 사진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③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상담소를 관계법령 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및 노동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전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u>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재정소요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함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계호	ㅇ민간위탁금	108,453	108,453	108,453	325,359
세출	소계(b)	108,453	108,453	108,453	325,35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72,437	72,437	72,437	217,311
도 비	10,806	10,806	10,806	32,418
시비	25,210	25,210	25,210	75,630
민 간	_	_	_	_
기타	_	_	_	_
합 계	180,453	108,453	108,453	325,359

-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 6. 작성자 :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 이인호(☎480-620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합계		108,453		
	소계	37,850		
	인건비	23,914	• 자문료(법률구조)	9,002,000원
		23,914	• 자문료(일반자문)	14,912,000원
			• 사무용품구입비	1,440,000원
			• 소모성물품구입비	810,000원
 상담 및			• 전산기기임대료	1,800,000원
경급 및 권리구제	OIHL		• 문서제작프로그램 이용료	450,000원
원스톱	일반 수용비	12,939	• 업무추진 간담회비	1,440,000원
	1 0 -1		• 홍보현수막제작비	3,300,000원
지원시업			• 배너 제작비	110,000원
			• 홍보전단지 제작비	320,000원
			• 외부광고료(시내버스 등)	3,269,000원
	공공요금 및제세 47		• 대표번호 회선사용료	477,000원
	여비	520	• 관내여비	520,000원
	소계	49,129		
	인건비	19,120	• 강사료	19,120,000원
			• 교육용 카드뉴스제작	1,080,000원
			• 교재 인쇄비	7,000,000원
	OTHE		• 문구류 구입	2,250,000원
노동	일반 수용비	16,289	• 교육 현수막 제작비	300,000원
교육	10-1		• 교육참석자 간식 구입비 등	3,000,000원
사업			• 소모성물품구입비	1,259,000원
			• 홍보현수막제작비	1,400,000원
	일반	10,800	• 교육용 동영상 제작비	7,200,000원
	용역비	10,800	• 교육용 웹툰 제작비	3,600,000원
	여비	2,920	• 관외여비	2,720,000원
	બન	2,320	• 관내여비	200,000원
	소계	21,474		
	OIHL		• 캠페인용 홍보물품 제작	6,600,000원
	일반 용역비	10,553	• 인쇄비 및 유인비(리플릿 제작 등)	3,400,000원
인식)		• 소모성물품구입비	553,000원
개선	개선		• 캠페인 식대	1,000,000원
캠페인	일반	10,201	• 캠페인 현수막 제작비	250,000원
	수용비	10,201	• 캠페인 배너 제작비	220,000원
			• 외부광고료(시내버스 등)	8,731,000원
	여비	720	• 관내여비	720,000원

ব	- 관 부 서	노동복지과
ට 归	과 장	손 혁 영
안	팀 장	이 중 호
자	담 당 자	이 인 호 (480-6204)